북일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북일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교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안내함으로써 준법정신을 준수하고 자기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 본교의 교훈인 '애국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을 스스로 실천하여 올바른 학교생활을 하는 '바람직한 북일 학생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교육기본법 [시행일 2008.06.22 | 법률 제8915호]』,
『초·중등 교육법[시행일 2012.07.27 | 법률 제 1121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일 2013.01.01 | 대통령령 제24148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05.01 | 법률 제11388호]』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39호[시행일 2012. 01.27]에 근거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선도협의회

제4조【학생선도협의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 협의회를 둔다.

② 학생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 교무부장, 학생복지부장, 각 학년부장 ,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하되 학생복지부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하되 찬반이 같을 때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선도협의회는 안건 심의에 앞서 담임교사와 관련교사를 참석시켜 학생의 신상 및 사안에 관한 제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본 협의회는 심의 전에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학교장은 선도협의회에서 심의된 처분 내용에 대하여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학생선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생선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 폭력 피해학생의 치료조치 및 보호방안
2.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와 처분 방안 등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

본교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자신은 물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 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선생님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 ·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형제와 같은 우애를 쌓는다.

제10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언어 또는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으로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생활지도 담당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상담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부(상담)교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학생선도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제11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동아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동아리의 등록은 매년 3월 초에 동아리 승인 신청서를 창의인성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승인 신청서에는 동아리의 명칭, 활동 목적, 활동 내용, 지도교사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 동아리 승인을 받은 후에는 연간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창의 인성부 담당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동아리는 평일 및 휴일에 진행되는 외부 행사에 교장의 허락을 받아 참여 할 수 있으며, 지도 교사의 인솔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각 동아리는 각종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며, 1년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⑥ 지도교사는 동아리 활동 참가학생의 활동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는 동아리를 해체할 수 있다.

1. 동아리 회원이 10인 미만이거나 1학기 동안의 활동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때(3회 미만의 정기 모임을 가지는 경우)
2.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불법 집회에 참가하여 단체행동을 한 경우
3. 불미스러운 일로 학교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경우
4. 불법 활동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지도교사가 해체를 건의할 때

⑧ 학기 중 해체된 동아리는 같은 학기에서는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제13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악기 보관실, 체력단련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실의 이용 시간과 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이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14조【용의복장】용의 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복장의 부착물(명찰, 뱃지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③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빨강, 노랑, 파랑 등 원색의 염색 및 삭발이나 과도한 퍼머를 하지 않으며 두발은 별도 규정을 둔다.

④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는다.

⑤ 기타 용의복장과 관련해 규정 위반과 관련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선도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⑥ 시기별 복장 규정

구 분	복 장	기 타
춘추복	지정 셔츠 및 넥타이, 동복바지,	혼용기간 조끼 착용 가능
하복	지정 하복 상의 및 하의 바지	지정 생활복 착용 가능
동복	지정 재킷, 조끼, 동복 셔츠 및 바지, 넥타이	실외에서 지정 외투 착용 가능

제15조【학급 내 주번 활동】

학생의 학급 내 주번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급비품 정리 정돈, 실내 청소. 학습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② 지정된 청소구역의 청결 및 정돈상태를 확인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 및 행정실에 보고한다.

④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아침청소 및 수업준비를 한다.

제16조【병원 외출 절차】

① 학생이 보건실에 가서 보건선생님과 상담 후 병원방문확인증을 받는다.

② 병원방문확인증을 가지고 담임선생님께 가서 외출증을 받는다(담임선생님이 안계신 경우 학년부장님께,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 선생님이 안 계신 경우 사감 선생님께 확인을 받는다.)

③ 평일에는 정해진 시간에 병원 이송 차량을 이용하며 주말이나 휴일엔 개인적으로 병원에 다녀와 담임교사 및 사감교사에게 보고한다.

제17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정규 교과 외 특정 목적을 위한 모임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기타 교사의 허락이 필요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제18조【출결사항】

① 수업일수

1.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2.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3.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4.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5.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제50조 제2항 참조).

② 결석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수는 제외).

③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 주5일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⑤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⑥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지각·조퇴·결과

1.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위의 ③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각 횟수는 제외

제2절 교외생활

제19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북일고등학교생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의 복용 및 흡입을 금한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⑨ 양심에 따라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한다.

제20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 관계
3. 학생(자녀)의 평소와 다른 습관, 태도, 이상한 행동 등

제3절 정보통신

제21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2조【통신기기 관리】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한다. 위반 시 벌점제 규정에 의거 불편함을 당할 수 있다. 휴대전화 외 전자기기를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이용할 경우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교내에 비치된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23조【명칭】본 회는 북일고등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제24조【목적】본 회는 학생들의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회원】본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일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26조【활동】본 회는 제2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민주적 자질을 키우기 위한 학교 내외의 여러 활동
2. 학예, 체육, 특기 신장에 관한 활동
3.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4. 고장의 전통,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5. 학생 복지와 학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
6. 기타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활동

제27조【권리와 의무】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3. 본 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제반 활동에 대해 알 권리를 지니며 활동 내역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기구】본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학생총회
2. 학생대의원회의
3. 중앙운영위원회
4. 동아리연합회
5. 학년 학생회 및 반 학생회
6. 자문위원회

제29조【학생총회 구성】학생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된다.

제30조【권한】학생총회는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승인
2. 총학생회장단 선출 및 불신임 의결
3. 이 회의 존립에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한 토의 및 의결
4. 기타 이 회의 활동에 관계된 중요 사항의 토의 및 의결

제31조【회의 및 소집】학생총회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1.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학생대표자회의의 결의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학생대표자회의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학생총회의 안건 및 개최 일시와 장소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제32조【의장】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으며, 총학생회장이 유고인 경우에는 선임학년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제33조【의결】총회의 의결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4조【학생대의원회 구성】학생대의원회의는 이 회의 상설 의결 기구로서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기타 임원 및 각 학급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5조【의장 및 서기】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 및 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으며, 총학생회장이 유고인 경우에는 선임학년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2. 의장은 서기를 지명한다.

제36조【업무와 권한】학생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회칙 개정의 발의
2. 임시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3. 학생회비의 책정
4. 학생회 사업 계획 의결 및 결과 보고 승인
5. 학생회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의결
6.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토의
7. 정 · 부학생회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
8. 집행부서장 임명 동의 및 탄핵
9. 특별위원회의 구성
10.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의 수렴 및 전달
11. 학교 행정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채택
12. 기타 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37조【의무】학생대의원회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학생 대표자들은 회의 안건 공고 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 및 견의 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접수 6일 이내에 토의에 들어가야 한다.

제38조【회의 및 소집】학생대의원회의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1. 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2.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학생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학생대표자회의의 안건 및 개최 일시와 장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장이 공고한다.

제39조【의결】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은 전체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0조【중앙운영위원회 구성】중앙운영위원회는 총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 집행부서장, 학년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학년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년별로 반 학생회장 대표 2인이 중앙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1조【업무와 권한】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수행한다.

1. 학교 연간 사업 계획을 보고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2.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3.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재정을 집행하며 학생대표자회의에 결산 보고를 한다.
4. 학생대표자회의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다.
5. 학교 측에서 학생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결정할 경우 학교 측 의결 기구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제42조【집행부】중앙운영위원회의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중앙운영위원회 내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집행부서장은 아래와 같이 임명된다.

1. 기획부 : 학생회 사업의 계획 및 조정 활동
2 총무부 : 내부 조정에 관한 활동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업
3. 봉사부 : 교내 봉사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
4. 문화부 : 축제 주관 및 각종 문화 예술 창작 활동
5. 홍보부 : 학생회 사업 홍보 및 학교 안내와 홍보 활동
6. 정보부 : 교지 및 선전 매체 발간
7. 복지부 : 학생 복지에 관한 활동

8. 체육부 : 체육 시설 및 체육 행사에 관한 활동
9. 경제부 : 학생회 사업 예산 편성 및 회계
10. 환경부 : 교내 환경 정화 및 환경 개선 활동
11. 선도부 : 교내 질서 유지 및 각종 봉사 활동

② 집행부서장 및 서기는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며 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각종 특별위원회는 학생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한시적 위원회의 성격으로 설립되며, 운영위원 및 기타 학생대표자회의 위원 일부를 포함한 지원자들로 구성한다.

제43조【반 학생회 구성】반 학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반 학생회는 각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 부회장, 집행부서장으로 반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3.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매년 3월중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단, 선거 일자는 통일적으로 결정하며, 교칙 위반으로 학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인 경우 업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의 선거 시기, 선거 방법은 회장과 같다.

제44조【학급회의】학급회의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집, 의결한다.

① 학급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눈다.

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학급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탄핵
2. 총학생회 사업의 실천사항
3.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발의
4. 기타 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제45조【학년 학생회】학년 학생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년 학생회는 각 학년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학년학생회장, 부회장은 매년 3월 중 각 학년 학급의 회장들이 호선한다.
3. 학년학생회장은 반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46조【구성】동아리연합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동아리연합회는 각 동아리의 부장(회장)으로 구성한다.
2. 동아리연합회장은 각 동아리의 회장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47조【업무】동아리연합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에 관한 사업을 계획 · 실행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관련 사업을 상정할 수 있고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2. 동아리연합회는 새로운 동아리 설립 인준을 처리한다.
3.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의 예산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학생회 재정의 일부를 동아리 활동 보조금으로 확보하여 각 동아리에 분배한다.

제48조【운영 규칙】동아리연합회는 별도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동아리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한다.

제49조【지도위원회 구성】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학생복지부장으로 하고 교사, 학부모 및 졸업생으로 7명 내외로 한다.

제50조【기능】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자문 및 지도
2.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지도

3. 총학생회 재정에 관한 자문 및 지도
4. 총학생회 결산 감사 지도
5. 기타 총학생회 활동에 관한 자문 및 지도

제51조【학생회비】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학생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2조【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말까지로 한다. 단, 학교의 회계 업무의 필요를 위하여 학년도 말에 임시 결산을 한다.

제53조【예산】본 회의 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안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작성하여 지도의원회의 자문과 학생대표자 회의의 결의를 통해 회계연도 개시 20일 이내에 확정된다.
2. 제 1호의 시일 이내에 확정되지 못하면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총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직전 회계 연도에 준하는 재정 집행을 결정 할 수 있다.
3. 예산안 확정 후 사업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대표자 회의의 결의를 거쳐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제54조【결산】결산안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작성하여 재정감사위원회의 감사, 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 및 학교장의 결재를 통하여 확정된다. 확정된 결산은 공고되어야 한다.

제55조【감사】본 회의 재정 감사는 학생 대표자 2인, 자문위원 2인으로 구성된 재정감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56조【학생회 및 학급 임원의 선출·임명·임기】학생회 임원의 선출·임명·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선거규정에 의하여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2.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매 학년도 6월 중에 실시하되, 회장은 2학년에서, 부회장은 1, 2학년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3. 각부 부장 및 차장은 회장이 지명한 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4. 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시작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1학기 종료일로 한다.
5. 총학생회장이 유고일 경우 잔여 임기가 150일 이상이면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150일 미만일 경우에는 부학생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학생회장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보궐선거 공고와 후보 신청 후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6. 학급회장, 부회장은 학급별로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57조【학생회 임원 및 학급 회장·부회장의 자격】학생회 임원 및 학급 회장, 부회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봉사 정신과 통솔력이 있는 자
2.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 이상인 자
3. 이전 학기, 이전 학년 중 학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대상자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4. 임기 중 징계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58조【학생회 임원 선거】학생회 임원 선거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① 선거 원칙

1.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는 전교생이 보통·직접·평등·비밀 선거로 하되, 단독 출마의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2. 1, 2학년 부회장 출마자가 없을 경우에는 회장 당선자가 지명한 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3. 학급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후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 관리 사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을 포함한 15명의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2. 학급의 선거관리는 각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이 되어 담당한다.

③ 입후보 등록

1. 총학생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은 선거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전체 학생의 3%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첨부-1)

2.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기간 내에 학년부장과 담임교사의 추천서(첨부-2)와 입후보자 신청서(첨부-3)를 제출해야 한다.
3. 입후보자가 선거 전에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첨부-4)를 제출해야 한다.
4. 후보의 기호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제59조【선거 운동과 소견 발표】선거 운동과 소견 발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를 방송을 통해 전 학생에게 알리고, 소정 양식에 의거한 입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제작 부착한다.

② 후보자 지원 발표 및 후보자 소견 발표

1. 선거 일정에 따라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갖는다.
2. 소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기호 순으로 한다.
3. 후보자 소견 발표는 6분 이내로 제한하며, 제한 시간이 되면 신호음으로 고지하며 고지 후 1분 후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한다.
4. 각 후보자의 찬조 연설 및 후보자의 소견 발표 원고는 선거관리위원장을 거쳐 자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후보자의 소견 발표 내용이 제출한 원고 내용과 다르며, 그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교칙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③ 선거 운동

1.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자 공고 후부터 투표 전날까지로 한다.
2. 선거 운동은 교내에서만 해야 한다.
3. 교실 순회 선거 운동은 허용된다. 단, 1교실 당 1회에 한하며, 선거 운동원 6인 이하만을 대동할 수 있다.
4. 피켓 제작을 허용하되, 피켓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한다.
5. 공식적 벽보 외의 어떤 유인물도 제작·배포해서는 안 된다.
6. 기타 금지 사항
   - 금품, 향응 제공은 금한다.
   - 유언비어나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된다.
   - 증거 없는 사실로 선동하는 발언은 금한다.

④ 입후보자가 규정 이외의 선거 운동을 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지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60조【투표·개표 및 당선·공고】투표·개표 및 당선·당선 공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투표와 개표

1. 투표는 학급 또는 지정된 투표소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2. 투표를 위한 제반 준비는 학생복지부에서 담당한다.
3. 투표는 각 학급의 선거관리위원의 지도·감시하에 실시하되, 비밀투표를 보장해야 한다.

② 투표의 완료 및 당선자 확인

1. 각 학급의 투표가 완료되면 학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완료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교생의 투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학생복지부에 완료 사실을 알린다.

③ 당선자 결정 및 당선자 공고

1. 집계 결과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단,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생활지도부장에게 보고한 후 학교장의 결재 후 당선자를 공고한다(이 때, 후보자별 득표수를 함께 공고한다).

제61조【회의 정족수】본 회의 모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2조【회칙 개정】이 회의 회칙은 학생대표자회의의 결의 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학생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4장 상·벌제

제1절 포 상

제63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의 포상, 표창 대상자를 투명하게 선발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4조【추천】 : 포상의 추천은 담임 또는 교과, 특별활동 담당교사 및 관련 부서장이 할 수 있다. 추천 시 증빙 자료 및 공적사항을 별도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 【대상】: 포상 학생은 교칙에 의해 해당 학년도에 징계사실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66조【포상구분】

① 교내상 : 평가회에서 심의하여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 학교장이 시행한다.(단, 부서업무와 관련한 시상은 담임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상할 수 있다.)

② 교외상 : 학년담임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

제67조【종류】 : 포상의 종류는 학업상, 학교장상, 근태상, 졸업생 시상 등으로 한다.

제68조 【학업상】

① 과목 우수상

1. 학기말에 이수과목 인원의 각 과목별 상위 4%(1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시상한다.
   가. 이수과목 학생 인원이 25명 미만일 경우에는 최상위자 1명을 시상한다.
   나. 예·체능 과목의 경우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상위 4%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2. 동석차의 경우에는 모두 시상한다.
3. 여러 과목을 동시에 수상하는 경우 과목 병기하여 1회 수상으로 한다.
4. 최우수 학업상 : 이수 대상 과목 전부가 이수 인원의 상위 4%에 해당할 경우 특별 시상(최우수 학업상 상패)한다. 단, 예·체능 과목의 경우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상위 4%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② 각종 교내 경시대회상 : 교과별로 계획한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에게 시상하며, 등위는 대상(1위), 금상(2위), 은상(3위), 동상(4위) 순위로 정한다.

제69조 【학교장상】

학기말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고 결석 3일 미만인 학생으로 한다.

① 선행부문

1. 교내외 생활에서 투철한 선행 사항으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학생
2. 위경에 처한 노약자, 병약자, 부상자를 보호 조치한 학생.
3. 불우한 학우를 헌신적으로 도와 준 학생
4. 타인의 범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 또는 방지한 학생
5. 주위 환경을 깨끗이 정돈하고 솔선수범하는 학생
6. 학생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가치를 지닌 습득물을 신고한 학생
7. 위 항 이외에도 선행 사실이 뚜렷한 학생

② 공로부문

1. 대외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학생(학생포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3이상의 찬성을 거쳐 결정한다)
2.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도부장, 야구부 주장, 기숙사 학사장으로 활동한 학생

③ 효행부문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만한 뚜렷한 효행을 실천한 학생

④ 봉사부문

1. 학생회 부장급 이상 임원으로 교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뚜렷한 성과가 있다고 인정된 학생
2. 학급의 회장(반장)을 1학기 이상 역임한 학생
3. 학교 홍보 및 신입생 유치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여 담당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4. 교지 편집위원
5. 교내외 봉사활동이 현저한 동아리 부장(방송부장, 관악부장, 학교신문부장, 영자신문 부장, 북일 기자부장, 응원부장, 도서부장, 풍물부장, 기숙사부장)
6. 기타 교내외 봉사활동이 현저하여 추천을 받은 학생

제70조 【근태상**】**

① 3년 개근상 : 3개년 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한 번도 없는 학생.
② 3년 정근상 : 3개년 간 결석 없이 지각, 결과, 조퇴를 합하여 3회 미만인 학생.
③ 전입 학생은 전 재적교와 본교에서의 출석일수가 다르더라도 결석, 지각, 조퇴, 결과에 따라 근태수상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1조 【졸업생 시상 **】**3학년부에서 심의 후, 평가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설립자상, 이사장상은 3학년부에서 5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 추천 자료를 토대로 학생포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① 설립자상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북일고등학교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학생으로, 설립자의 건학이념, 설립자 훈에 따른 본교의 교육이념(교훈)에 부합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② 이사장상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본교의 교육이념(교훈)과 이사장의 덕목에 부합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③ 교육감상, 동창회장상 등 대외상 : 우리 학교의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한, 3학년 1, 2학기 합산 성적인 학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대학입시 결과를 고려, 별도 규정을 정해 시상한다.
④ 기타 대외상 : 시상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선정(추천)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 추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학년부의 협의에 의해 선발·추천·시상한다.
⑤ 학업 우수상 : 우리 학교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한 3학년 1, 2학기 성적을 합산하여 계열별 11%(2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 수여한다.

제72조【기타**】** : 본 규정에 없는 시상은 필요에 따라 각종 대회에서 얻은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이 시상할 수 있다.

제2절 징계

제73조【징계 조치 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와 선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74조【징계 심의】

1. 학생선도협의회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학생선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5조【재심 요구】

학교장은 학생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징계의 종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근거함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안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정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

제 77 조【선도조치의 기간 및 방법】제 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대상자 : 상·벌점 규정에 의한 벌점 누가점수 20점 이상인 학생, 무단 결석 연속 3일 이상 또는 합 7일 이상인 학생, 기타 사안으로 선도협의회에서 심의된 학생
2. 기간 : 5일 이내로 하며 사안에 따라 차이를 둠
3. 지도 원칙 : 정규 교과 외에 지도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교과 시간을 이용한 지도도 가능함
4. 지도 내용 : 교내 환경 정화, 교직원 일손 돕기, 선행일기 쓰기, 학습 과제 수행, 담임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 상담, 장학생 선발 제외, 기타

② 사회 봉사

1. 대상자 : 벌점 누가 점수 20점 이상 2회 지도를 받은 학생, 무단 결석 연속 5일 이상 또는 합이 10일 이상인 학생, 기타 사안으로 선도협의회에서 심의된 학생
2. 기간 : 7일 이내로 하며 사안에 따라 차이를 둠
3. 기관 선정 : 학생복지부와 창의인성부가 함께 주선함
4. 지도 내용 : 위탁기관의 프로그램 준수 확인, 선행일기 쓰기, 학습 과제 수행, 학생복지부장 및 상담교사 상담, 장학생 선발 제외, 기타

③ 특별교육 이수

1. 대상자 : 사회봉사로 가중처벌 받은 학생, 본교 4대 중벌 항목 징계를 받은 학생, 기타 특별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한 학생
2. 기간 : 10일 이내 또는 운영 기관 프로그램 이수
3. 방법 :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이수하게 함.
4. 지도 내용 : 위탁기관의 프로그램 준수 확인, 선행일기 쓰기, 학습 과제 수행, 학생복지부장 및 교감 상담, 장학생 선발 제외, 기타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 대상자 : 본교 4대 중벌 항목 2회 이상으로 징계 받은 학생, 2회 이상의 특별교육 이수자, 기타 출석 정지가 필요하다고 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한 학생
2. 방법 : 교육감이 지정하는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부모의 동의하에 필요한 교육 및 치료를 가정에서 받게 함
3. 지도 내용 : 특별교육 프로그램 준수 확인, 선행일기 쓰기, 학습 과제 수행, 학생복지부장 및 교장 상담, 여송학사 퇴사, 장학생 선발 제외, 기타

⑤ 퇴학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규정 위반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분하며, 사안 발생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2(퇴학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 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에 근거하여 처리함, 본교 4대 중벌 항목 3회 이상으로 징계 받은 학생

* 본교 4대 중벌 항목

4대항목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음주,흡연			○	○	○
도박,절도			○	○	○
왕따,따돌림			○	○	○
폭력			○	○	○

* 학교폭력 관련은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며 나머지는 선도협의회에서 처리함

제78조【징계의 절차】

1. 모든 징계는 담당교사의 진술서와 담임교사의 학생 신상에 관한 의견진술을 토대로 해당 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2. 선도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학생 및 학부모를 참석시켜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선도협의회가 이루어짐을 확인시키도록 한다.
3.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담당교사는 징계내용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담임교사는 학생 징계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4. 보호자가 징계 내용에 대해 이의를 재기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재차 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재협의를 한 후 징계를 재확정 할 수 있다.
5. 징계 기간은 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산정하며 학교장 부재 시는 선도협의회 위원장 (교감)이 징계권을 대행할 수 있다.
6. 학교장은 필요시 해당 선도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케 할 수 있다.

제79조 【심의 확정】 징계 조치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80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81조【선도처분 유보】 출석 정지 이하의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2조【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3조【징계 받은 학생의 효력】 학교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은 학생은 당해 학년도의 표창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생 자치회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84조【징계의 해제】 징계는 기간만료와 동시에 해벌되며, 해벌은 징계기간 중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담임교사의 요청으로 징계 담당교사 및 선도교사와 협의하여 학생부장교사가 학교장에게 해벌을 건의하여 결재를 받아 해벌될 수 있다.

제3절 상·벌제

제85조【운영원칙 및 목적】

상 · 벌점제의 운영은 학생들의 상벌점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3.3.1.부터 새롭게 시행하며 본 규정에 따라 학생 생활의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징계 대상 학생을 최소화 하고, 징계 대상이 될 만한 중대 생활 규정 위반 행동을 사전 예방하며 모범적인 학생들을 격려•1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 · 벌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 · 벌점제용 카드를 사용한다.
2.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 자율성, 책임감,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3. 상 · 벌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선도협의회를 활용한다.
4. 벌점제 시행은 학칙에 규정된 징계 이하의 내용이거나 규정된 내용이지만 그 정도가 미약한 경우의 생활지도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한다.
5.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별도의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다.

제86조【지도카드의 종류와 기능】

1. 전 교사 및 학생회 임원은 지도카드를 소지하여 학생생활을 평가할 수 있다.
2. 지도카드는 생활규범을 위반할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로 구분한다.

제87조【카드의 활용】

1. 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는 적발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내용을 기재한다.
2. 학생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교사가 날인하여 생활지도부 담당교사에게 카드를 제출한다.

제88조【벌점제】

벌점제의 기본방향은 학교 생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는 교육 활동으로 활용하고, 징계 대상이 될 만한 중대 생활 규정 위반 행동을 사전 예방하는 교육 활동으로 활용하여 징계 대상 학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부에 제출된 상 · 벌점 카드에 의한 점수는 담당교사가 누가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며 매월 말 통계를 내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벌점은 학기말에 소멸된다.
2. 벌점은 개인별로 누적되며, 벌점의 누적 점수에 따라 별도의 상·벌점 기준 및 운영에 따라 처리한다.
3. 벌점은 한 학기 단위로 누적 관리되고 상점으로 상쇄할 수 없다.

제89조【벌점경감】

벌점을 부여받은 학생이 생활지도에 관하여 표창을 받을 경우 벌점 누계에서 1점을 경감하고, 상점을 받은 학생은 그 상점만큼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징계규정안에 의거하여 처벌 중에 있는 학생은 표창과 관계없다.

제90조【상점제】

상점제의 기본 방향은 학교 생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는 교육 활동으로 활용하고, 일정 상점을 받은 학생에게 모범학생 표창이나 장학생 선발의 요소로 활용하고, 벌점 경감에 활용한다.

1. 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상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안과 같이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1주 기준)

제91조【이의신청】

학생이 지도교사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생부 담당교사 또는 학생부장에게 이의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 하며, 학생부 담당교사 또는 학생부장은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92조【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 · 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장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제93조【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4조(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 · 검사 · 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특히 자치위원회 구성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제95조【자치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제9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②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3. 전학
4. 학교에서의 봉사
5. 사회봉사
6.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7.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가해학생이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9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②항부터 제⑤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비밀누설금지 등 】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1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 상담교사, 생활지도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 홈페이지 또는 신고함
3.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4.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5.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6.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학생·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정하는 결정을 따른다.

제102조【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사가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개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3조【개정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일부 개정·공포한다.

상·벌점 기준 및 운영

북일고등학교

1. 상점 적용 기준표

항목	세부내용	기준 상점
1	교칙을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귀감이 됨	1
2	분실물을 습득하여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함	1
3	4대 학교 중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함	2
4	외부로부터 학교의 명예를 높인 선행으로 추천받은 학생	2
5	수업 도우미로 한 학기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학생	5
6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학교 및 학생회 발전에 기여함	3
7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학교생활을 도와 귀감이 됨	2
8	교과활동을 근면하게 수행하여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1
9	자발적인 청소활동 및 교내 시설물 아끼는 태도가 뛰어나 추천받은 학생	1
10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귀감이 되어 추천받은 학생	2
11	학생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줌(또래중재 또는 상담)	2
12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 활동함	2
13	부모 및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가 뛰어나 남의 귀감이 됨	2
14	시간을 잘 지키고 거짓말을 안하며 평소 바른말을 사용하여 귀감이 됨	1
15	헌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1/회
16	교직원 또는 학생회에서 위 항목 외의 선행으로 추천(선도협의회에서 적절한 상점 부여)	

2. 벌점 적용 기준표

항목	세부내용	기준 벌점
기 본 생 활 태도	시간 약속 위반 행위, 거짓말 행위, 학생 상호간 불손한 언행	1
	용의복장 규정 위반(제14조), 주번 활동 규정 위반(제15조)	1
	학교 시설물 훼손 행위	1
	학교 시설물 고의 파손 : 선도 위원회 회부	변상
	음식물 반입(수업이 이루어지는 실내, 강당 및 실외, 기타)	1
	지정 장소 외에 쓰레기 버리는 행위	1
	유해업소(게임방, 오락실) 출입 행위, 성행불량으로 외부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1
	휴대폰 소지 적발	2
	휴대폰 사용 적발	5
근 태 및 학 습 태도	소정 등교 시간 지각, 수업태도 및 준비 불량	1
	교사에 대한 언행 불손 및 지시 불이행(선도 협의회 회부)	2
	학교 단체행사 불참	1
	기일 내 도서 반납하지 못한 경우	1
	학교 도서 분실 및 훼손 행위	1 변상
	학습 목적 외의 컴퓨터 사용	1
	고의로 학습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선도협의회 회부)	5
	자기주도 학습시 무단 이동, 소란해위, 잡담 등 타인존중을 하지 않는 모든 행위	1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학생(선도협의회 회부)	5
	시험을 거부한 학생(선도협의회 회부)	5
준 법 태도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2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등하교하는 학생	2
	경찰 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선도협의회 회부)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2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2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선도협의회 회부)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1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1
	불법 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한 학생(선도협의회 회부)	
특 별 규정	음주 및 흡연	선도위원 회 회부
	도박 및 절도 관련 행위	
	띠돌림, 왕따 관련 행위	
	학교폭력 관련 행위	
기타	상기 항목에 없는 것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선도협의회가 심의하여 처리함	

3. 세부 운영

1. 상점 관련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자료로 쓴다.
2. 학년 당 상점 누적이 20점 이상이면서 벌점이 없는 학생은 학년말 선행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3. 3년간 상점 누적이 60점 이상이면서 벌점이 5점 미만인 학생은 졸업식 시상에서 선행상 후보로 추천한다.
4. 3년간 벌점이 없는 학생은 졸업식 시상에서 모범상 후보로 추천한다.
5. 벌점은 학기당 누적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 학기로 넘어가지 않는다.
6. 벌점 누적이 다음과 같을 경우 학생복지부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벌점 누적 10점 이상 : 담임 교사 및 학생지도 관련 담당교사 상담, 외출 2회금지(여송학사생의 경우), 해당 학기 선행, 모범, 봉사상 추천 금지

나. 벌점 누적 15점 이상 : 학부모 통보 및 소환, 담임 및 학생복지부장(상담교사) 상담, 외출 4회 금지(여송학사생의 경우), 해당 학기 선행, 모범, 봉사상 추천 금지

다. 벌점 누적 20점 이상 : 학교내 봉사를 명함, 담임, 학생복지부장, 교감 연계 상담, 해당 학기 선행, 모범, 봉사상 추천 금지, 장학생 선발 제외

6. 상점은 벌점 상쇄로 이용할 수 없다.
7. 기타 상·벌점 관련 사항은 선도협의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